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9277 손해배상(기)  
원 고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1.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redacted]

2.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3. 경상북도  
대구 북구 연암로 60  
대표자 도지사 김관용

4. [redacted]  
[redacted]

대표자 [ ]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09. 7. 14.

판결선고 2009. 8.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진 자로써 2008. 5. 10.경 사망한 [ ] ( [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 [ ]은 [ ] [ ]에 있는 [ ]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 ] (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 ]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 ]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키 180cm, 몸무게 110kg 정도의 체격을 가진 14세의 미국인으로, 2008. 5. 10. 22:00경 원고와 함께 [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에 목욕을 하기 위해 입장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우나의 종업원인 소외 [ ]은 같은 날 23:05경 망인이 목욕탕 내 폭포수 안마탕(가로, 세로 각 2.6m, 깊이 40cm 정도) 안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같은 날 23:20경에도 망인이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보고 망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망인이 전혀 움직이지 않자 망인을 탕 밖으로 끌어내 살핀 뒤 119에 신고하였다.

라. 119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34경 이 사건 사우나에 도착한 경산소방서 구급대 소속 2급 응급구조사 [ ]는 망인이 호흡 및 의식이 없고 동공이 확장되어 있으며 경동맥에서 맥이 느껴지지 않고 손끝, 입술이 창백한 상태인 것을 관찰하고 망인의 기도 유지를 위하여 수건을 말아 망인의 목뒤에 대고 수동식 산소공급기로 산소를 주입시키며 응급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한 뒤 구급차로 옮겨 가장 가까운 병원인 [ ] [ ]으로 이동하였다.

마. 당시 [ ]는 망인에게 심실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위해 망인의 가슴에 제세동기 패치를 부착하였으나 맥박이 없어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 심실제세동기는 심실세동이라는 심장의 박동기능이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계로서, 부상자의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시키고 일정량의 전기충격을 심장에 가하도록 고안된 기구이다. 자동심실제세동기는 먼저 자체적으로 심장리듬을 분석한 후 심실세동이 측정되어 전기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전기충격을 가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맥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전기충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바. 망인은 같은 날 23:50경 [ ]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 ] 의료진은 망

인의 동공이 확장되어 있고 호흡 및 맥박, 혈압이 없으며 심전도도 일직선(flat)으로 나타나 심장박동이 멈춘 것으로 나타나자 기관내 삽관 및 앰부백(수동식 산소공급기)을 이용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폐내 물 흡입, 전기충격을 실시하고, 아트로핀(atropine), 에피네프린(Epinephrine), 비본(Bivon) 등의 강심제 및 혈압상승제를 주사하였으나 망인을 소생시키지는 못하였다.

사. 망인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이고, 망인의 심장무게는 460g(정상 : 300~350g) 정도이며 좌심실벽과 심실간 격막이 두꺼워져 있었고, 간세포가 손상되어 있는 등의 소견을 보였는 바, 심장비대증과 관련한 급성 부정맥 또는 간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인하여 익사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11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24, 25, 16호증의 2, 을다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련 법령의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의2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13조의3 (응급의료위원회)

①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 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항공법」 제2조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0. 「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1. 「선원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재정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11. 대통령령 제20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제6호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법 제47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 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 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 제6호 나.목 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 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 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청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6. 13. 규칙 제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별표1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12. 26. 법률 제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이하 "안전시설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시설 등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

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한다.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방화시설(방화시설) : 방화문과 비상구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은 (1) 이 사건 사고로부터 1개월 정도 후인 2008. 6.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 바, 망인의 목과 인후부의 손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심한 기침과 구토를 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우나에 함께 있던 15명 정도의 사람들은 망인의 상태를 알았을 것임에도 면책규정의 부존재로 인해 위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결과 발생시 면책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망인을 그대로 방치하게 한 입법불비의 과실이 있고,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은 자동제세동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위 규정의 해석상 응급조치가 가능한 자를 1명 이상 상근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할 것인 바, 피고 대한

민국은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이와 같은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4) 설령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와 같은 법률상의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초법규적인 의무로서 이와 같은 입법 의무 및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불법행위자인 나머지 피고들과 각자 망인의 일실수입 316,000,000원 및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60,000,000원 또한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합계 45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은 모든 피고에게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생략한다)

#### 나. 판 단

##### (1) 입법불비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2008. 6. 13.에야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의 특칙으로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15호증의 9, 24, 25, 30, 을나 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의식이 소실되어 익사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익사의 경우 두부(頭部)가 무거우므로 아래로 가라앉아 두부 및 경부에 울혈이 생길 수 있으며, [ ] 병원에 도착한 후 망인에게 기도삽관을 행하여 인후부에 손상이 있었으므로 목의 손상만을 가지고 망인이 심한 기침과 구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안마당은 목욕탕의 한쪽 구석에 위치하며 앞에는 샤워기가 설치된 1m 이상 높이의 벽에 가로막혀 있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고, 실제로 같은 날 22:35 및 22:45경에 목욕탕 내부

에서 정리작업을 한 [ ] 및 같은 날 23:00경 목욕탕 안에 들어간 이 사건 사우나 이용객인 소외 [ ]은 모두 망인의 소리를 듣거나 망인을 보지 못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신음소리를 내거나 심한 기침과 구토를 하여 목욕탕 내에 있던 이용객들이 이를 보거나 들었음에도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면책규정의 부재라는 입법불비와 당시 이용객들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5조상의 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같은 법 제14조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 구급차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및 경찰공무원 등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관리자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거나 위와 같은 의무의 미이행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제세동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의료기관, 소방기본법 상의 구급차, 항공법상의 항공기 및 공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상의 철도차량 중 객

차, 선박법상의 20톤 이상 선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 6. 11. 개정되어 2008. 6. 15.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의 2에 의하더라도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경마장, 경륜장, 교도소 등 수형시설, 종합운동장, 정부청사 등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 목욕업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써,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따른 안전시설 등은 소방시설 및 영업장 내부의 통로와 창문,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등인 바,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법상의 안전시설은 화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재난상태에 대비한 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자동제세동기나 심폐소생술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인력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자동제세동기 및 응급조치가 가능한 인력을 구비하여야 할 현행 법률상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국가의 초법규적 보호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법령에 명시적으로 국가 또는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며(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무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선의의 사무관리자에 대한 면책 규정과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에 다중목욕업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일반적, 잠재적인 위험이 아닌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입법 및 지도·감독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피고 경상북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경상북도는 (1) 피고 대한민국과 함께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지도·감독하여야 의무가 있는 바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2) 이 사건 119구급대에 1급 응급구조사 및 자동 산소호흡기가 있었더라면 폐에서 물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전문 구조술로 망인을 소생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119구급대에는 2급 응급구조사만 있었고, 자동 산소호흡기 등의 구조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함으

로써 망인을 살리지 못하였으므로 119구급대의 감독관청인 피고 경상북도는 국가배상 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5조상의 의무 불이행 및 다중이용업 주에 대한 지도 · 감독 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5조상의 의무가 피고 경상북도가 원 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거나 위와 같은 의무의 미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자동제세동 기 및 응급조치가 가능한 인력을 구비하여야 할 현행 법률상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함 은 앞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2) 119구급대의 구조시설 미비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는 구급차에 응급 구조사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1급 응급구조사일 것을 요하지는 아 니하고, 1급 구조사라 하더라도 폐에서 물을 흡입하는 행위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갑 15호증의 21,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구급 차 내부에는 제세동기와 산소통, 산소공급장치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망인의 맥이 없어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망인의 호흡이 전혀 없어 산소공급보다 심폐소생 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어야 하는 사정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출동한 응급구조사 ■ ■는 망인의 기도 유지를 위하여 수건을 말아 망인의 목뒤에 대고 수동식 산소공급 기로 산소를 주입시키며 응급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이행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119구급대가 응급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 ]은 (1) 다중이용업주로서 앞서 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에 의하여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2) 이 사건 사우나의 종업원인 [ ]은 같은 날 23:05경 망인이 탕 안에서 옆드려 있는 것을 보았다면 망인에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바 피고 [ ]은 [ ]의 사용자로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할 때 위 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은 소방시설 및 영업장 내부의 통로와 창문,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으로, 위 법상의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이라 함은 화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재난상태에 대비한 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우나에 자동제세동기 및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을 구비하여야 할 현행 법률상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 (2) 사용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우나의 종업원인 [ ]이 이 사건 사고 당일 23:05경 망인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탕에 들어가 눕거나 옆드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안마

탕의 깊이가 40cm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을 처음 보았을 때 곧바로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은 같은 날 23:20경 망인을 두 번째로 보았을 때 망인이 처음과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보고 망인을 살핀 뒤 바로 119에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과정에서 ■■■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 6. 피고 의료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의료진은 망인에게 전문 심장구조술을 시행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및 전문 심장구조술을 시행할 수 없다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망인을 전원시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법인에게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전문 심장구조술(ACLS,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은 기본 심폐소생술과 달리 일반인이 시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로, 심정지환자에게 행하는 ① 기도 삽관 및 산소투여, ② 제세동기를 이용한 심장제세동, ③ 심근 수축력 및 혈압을 상승시키는 제재 및 항부정맥제, 혈관확장제 등의 약물 투여를 통한 치료방법이다.

### 나. 판 단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본 심폐소생술은 목을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구강대 구강법으로 호흡을 유지하며, 심장마사지로 순환을 유지시키는 방법이고, 전문 심장구조술은 기관내 삽관을 통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엠부백 등을 통하여 호흡을 유지하며, 약물 투여 및 제세동기 사용으로 순환을 유지하는 방법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 ] 의료진이 기관내 삽관 및 엠부백을 이용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폐내 물 흡입, 전기충격을 실시하고, 아트로핀(atropine), 에피네프린(Epinephrine), 비본(Bivon) 등의 강심제, 혈압상승제를 주사하는 등의 전문 심장구조술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_____
	판사	신민수	_____
	판사	남효정	_____